

의안번호	2200879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4. 6. 27.
추 계 번호	24C1330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억 5,000만원씩 5년간 총 17억 5,000만원(연평균 3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(안 제40조의2)	350	350	350	350	350	1,750	35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0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서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대국민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장애인차별 및 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2023년 대국민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 2억원, 장애인차별 및 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·송출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(전년 동액)
 - 위 사례를 참고하여,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종류에는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영상 제작·송출이 있다고 가정하고, 참고 사례의 단가를 적용
 - 캠페인과 홍보영상 제작·송출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단가는 매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7억 5,000만원(연평균 3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에 대한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인식개선 캠페인(A)	200	200	200	200	200	1,000	200
홍보영상 제작·송출(B)	150	150	150	150	150	750	150
추가재정소요(A + B)	350	350	350	350	350	1,750	3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유사사례를 적용한 추계결과로 홍보사업의 종류 및 규모, 횟수 등이 변동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